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부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해당 연도 월 보수로 변경하는 등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준 등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72호, 2026. 3. 17.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의 보수 신고 방법 및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방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근로자의 월 보수 신고(안 제19조의7 및 별표2)

- 1) 사업주의 근로자 월 보수 신고 의무가 규정됨에 따라, 신고기한·신고사항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함
- 2)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 신고한 것으로 보는 소득자료의 종류를 정함
- 3) 근로자 월 보수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

나. 근로자 및 예술인의 월평균보수 산정방법(안 제19조의3)

근로자·예술인의 월평균보수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토대로 산정하고 있었으나,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가 폐지되고 해당연도 월 보수 신고가 신설됨에 따라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산정 관련 사항을 삭제함
다. 정보통신망 이용 신고에 대한 보험료 경감 개선(안 제30조의3)

사업주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 신고한 경우 뿐만 아니라 국세 당국에 소득자료 제출하여 월 보수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보험료 경감 적용

라. 보험사무대행 개선(안 제46조 및 제52조)

- 1) 사업주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보험사무의 범위에
근로자 월 보수 신고 신설
- 2)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위임사업주 소속 근로자 월 보수 신고를 대행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를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이하 “정산보험료”라 한다)액의 합계액”을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보험료(이하 “합산보험료”라 한다)액”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산정한 월별보험료

나. 법 제16조의9에 따라 정산된 보험료와 이미 납부한 보험료 간의 차액

다. 법 제16조의6에 따라 조사 결과 산정된 보험료와 이미 납부한 보험료 간의 차액

제17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 연도의 합산보험료액 또 × 는 확정보험료액)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에서 보험 관계가 지속된 기간의 총 개월수)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 또는”을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으로, “산정하여 사업주가 공단에 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을 “산정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노무제공”으로, “전년도 보수총액”을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한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노무제공”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를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로,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을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로,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을 “노무제공을 하기로 한”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다만, 근로계약 기간 또는”을 “다만,”으로,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을 “노무제공을 하기로 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근로 또는”을 “예술인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는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월의 전월(前月)에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 또는 보수액으로 한다.

제19조의3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법 제16조의3”을 “제1항”으로 한다.

⑤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공단이 근로자의 월 보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9조의7제4항제1의2호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월 보수를 근로자 개인별 월 보수로 본다.

제1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휴직”을 “휴직, 노무제공자의 휴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로자의 휴업·휴직 및 노무제공자의 휴업

제19조의5제2항 중 “월평균보수 또는 보수총액”을 “월 보수”로 한다.

제19조의6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의9제1항”을 “법 제16조의9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의7의 제목 “(보수총액 등의 신고)”를 “(월 보수 등의 신고)”로 한다.

제1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주는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수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경우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3항에 따른 사항을 공단에 신고한 때에 월 보수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의7제1항제1호 중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

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근로자 개인별 월 보수

②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말한다.

③ 법 제16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자료”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말한다.

제19조의7제4항(종전의 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따른 근로자 또는”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을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기준 미만인 근로자”로, “같은 영 제3조의3제2호”를 “같은 영 제3조의4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항”으로, “보수총액만”을 “월 보수의 합계액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제2호 중 “보수총액”을 “월 보수, 보수총액 또는 월 보수액”으로 한다.

1의2. 근로자의 월 보수

제19조의7제9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항”을 “제8항”으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7항제1호”를 “제8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제7항제4호”를 “제8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7항제5호”를 “제8항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7항제6호”를 “제8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9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6항 및 제8항”을 “제1항, 제4항, 제6항, 제7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제19조의8의 제목 “(문서에 의한 보수총액 신고)”를 “(문서에 의한 월 보수 등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년도 말일 현재”를 “월 보수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으로 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법 제48조의3제3항”을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월 보수, 법 제48조의3제3항”으로, “영 제19조의3”을 “영 제19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로, “월평균보수”를 “월평균보수, 이 영 제19조의7제4항제1의2호에 따라 신고한 월 보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경제성장율”을 “경제성장률”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

제29조의2제3항 중 “지원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제56조의6제7항에 따른 월 보수액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월 보수 신고

2. 지원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법 제48조의3제5항 및 이 영 제56조의6제7항에 따른 월 보수액 신고 제3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업주가 지원대상 예술인에 대하여 법 제16조의10제4항에 및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한 해당 예술인의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제28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의 100분의 110을 넘는 경우(지원대상 예술인이 보험연도 중에 새로 노무제공을 개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해당 예술인에 대하여 지원받은 금액 전부

제30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보수총액”을 “월 보수·보수총액·월 보수액”으로, “고용보험료 5천원 및 산재보험료 5천원”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①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간이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제31조의2의 제목 “(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반환)”을 “(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등 반환)”으로 한다.

제32조제2호 중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을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6조의10에 따른 월 보수 등의 신고,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법 제48조의3제5항 및 제48조의6제8항에 따른 월 보수액 신고

제47조제2항제5호 중 “보수총액”을 “월 보수 · 보수총액 · 월 보수액”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2호 중 “보수총액”을 “월 보수 · 보수총액 · 월 보수액”으로 한다.

제54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수 · 보수액 · 월평균보수”를 “월 보수 · 월평균보수 · 월 보수액 확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지급명세서,”를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로 한다.

제55조제1항제2호 중 “보수총액”을 “월 보수 · 보수총액”으로 한다.

제56조의5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제7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중 “법 제48조의2제4항”을 “법 제48조의2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5항) 전단 중 “법 제48조의2제7항”을 “법 제48조의2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9조의4, 제19조의9”를 “제19조의9”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한 고용보험료의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을

“대한”으로,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3조”를 “제33조”로 한다.

④ 사업주가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술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예술인의 노무제공 내용

3. 예술인의 전년도 개인별 보수총액

4. 사업주가 보험연도 전년도 중에 예술인으로부터 노무제공을 새로 받은 경우에는 그 노무제공 개시일(「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5. 그 밖에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적 기록매체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 예술인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주는 해당 신고를 문서로 할 수 있다.

⑧ 법 제48조의2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예술인의 휴업을 말한다.

제56조의6제1항 단서 중 “영 제19조의7제3항”을 “영 제19조의7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내용과 월 보수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제2호 중 “제19조의4, 제19조의9”를 “제19조의9”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한 고용보험료의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을 “대한”으로,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3조”를 “제33조”로 한다.

1. 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내용
3. 노무제공자의 개인별 월 보수액
4. 그 밖에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6조의2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법 제16조의10·제48조의2제4항 및 제48조의3제5항에 따른 월 보수·보수총액·월 보수액 등의 신고에 따른 사무
9. 법 제16조의11(법 제48조의2제10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월 보수·보수총액·월 보수액 수정신고에 관한 사무

별표 2 제1호가목 전단 중 “제48조의2제8항제1호”를 “제48조의2제10항제1호”로, “제16조의10제1항·제2항, 제17조 및 제19조를”을 “제17조, 제19조 및 제48조의2제4항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 위반행위란 1)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를 “법 제48조의2제10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가목2) 위반행위란 2)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를 “법 제48조

의2제10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4) 및 5)를 각각 3) 및 4)로 하며, 같은 호 3)을 5)로 하고, 같은 호 가목5)(종전의 가목3)) 위반행위란 5) 중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48조의2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2호라목(종전의 다목) 위반행위란 라목 중 “법 제48조의2제8항 제3호”를 “법 제48조의2제10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사목(종전의 바목) 위반행위란 사목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4호”를 “법 제48조의2제10항제4호”로 하며, 같은 호 아목(종전의 사목) 위반행위란 아목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4호”를 “법 제48조의2제10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자목(종전의 아목) 위반행위란 자목 중 “법 제48조의6제8항”을 “법 제48조의3제5항, 제48조의6제8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2호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 자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 자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 자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	---	---	---

별표 2 제2호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 자 1명당 5만원, 100만원 한도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 자 1명당 8만원, 200만원 한도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 자 1명당 10만원, 300만원 한도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을 산정할 때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산재보험료의 금액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제3조(보수총액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사업주가 법률 제2147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2027년 3월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19조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사업주가 법률 제2147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보수총액

을 신고하는 때에 문서로 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은 제19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사업주가 법률 제2147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때에 경감하는 고용·산재보험료는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공단,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 또는 플랫폼 운영자가 법률 제2147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56조의2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월평균보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 제2147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월평균보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납부 대상이 되는 근로자 및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률 제2147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월평균보수로

월별보험료를 산정한 경우 해당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의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2147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보수충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항제1호 중 “제48조의2제8항제3호”를 “제48조의2제10항제3호”로 한다.

제21조의3제2항제2호가목 중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2제10항제3호”로 한다.

②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6제1항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으로, “월평균보수의 3개월분”을 “월 보수의 3개월분”으로, “월평균보수의 산정”을 “월 보수

의 산정”으로, “월보수액”을 “월 보수”로 한다.

③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6제3호 중 “보수총액”을 “월 보수”로 한다.

④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5제2호아목 중 “월평균보수”를 “월보수”로 한다.

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월평균보수, 보험료, 자격정보 등”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월보수, 보험료, 자격정보 등”으로 한다.

⑥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나목 중 “월평균보수”를 “월 보수”로 한다.

⑦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2항제2호가목 중 “근로자”를 “근로자의 월 보수”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2(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제2조의2(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 ----- ----- -----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
제17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산정할 때 산재보험료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 ①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기준보험연도의 직전 2개 보험연도의 경우: 법 제16조의9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이하 “정산보험료”라 한다)액의 합계액[제19조	2. -----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보험료(이하 “합산보험료”라 한다)액----- -----

의2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액의 합계액]

<신 설>

<신 설>

<신 설>

3.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6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의 정산보험료액 ×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에서 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액) × 보험연도에서 보험 계속된 기간의 총 개	

② ~ ⑤ (생 략)

제19조의3(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금액을 산

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산정한 월별보험료

나. 법 제16조의9에 따라 정산된 보험료와 이미 납부한 보험료 간의 차액

다. 법 제16조의6에 따라 조사 결과 산정된 보험료와 이미 납부한 보험료 간의 차액

3. -----

	6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의 합산보험료 ×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에서 보험료액 또는 확정보험료액) × 보험연도에서 보험 계속된 기간의 총 개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의3(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

----- 산

정하여 사업주가 공단에 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1.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

2. 해당 보험연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1년 동안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 다만, 근로계약 기간 또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하여 신고한 월평균보수의 적용기간은 다

정한 -----

-----.

1. ----- 노무 제공이 -----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한 전년도 보수총액-----
노무제공을 -----

2. -----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

----- 노무제공을 하기로 한 -----

----- 노무제공을 하기로 한 -----

-----.

② -----

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③ 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에서 “일용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

2. 3. (생략)

④ 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월평균보수는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월의 전월(前月)에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 또는 보수액으로 한다.

<신설>

-----.

1. (현행과 같음)

2. ----- 예술인이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는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월의 전월(前月)에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 또는 보수액으로 한다.

<삭제>

1. 2.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삭제>

⑤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공단이 근로자의 월 보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⑥ 삭 제

⑦ 사업주는 법 제16조의3에 따라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 보수 또는 보수액이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월평균보수를 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월평균보수를 다시 결정하여 보수 또는 보수액이 인상 또는 인하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19조의4(월 중간에 종료되는 고용관계 변동 사유) 법 제16조의 4제3호에서 “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근로자의 휴업·휴직

2. 3. (생략)

제19조의5(보험료 산정 시 월평균
보수 등에서 제외하는 보수) ①

제19조의7제4항제1의2호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월 보수를 근로자 개인별 월 보수로 본다.

⑦ 제 1 항

제19조의4(월 중간에 종료되는 고용관계 변동 사유) -----
----- 휴직, 노
무제공자의 휴업 -----

-----.

1. 근로자의 휴업·휴직 및 노 무제공자의 휴업

2. · 3. (현행과 같음)

제19조의5(보험료 산정 시 월 보수 등에서 제외하는 보수)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중의 보수는 산재보험료를 산정할 때 월평균보수 또는 보수총액에서 제외한다.

제19조의6(예술인의 고용보험료의 산정) 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산정할 때에 월별보험료를 부과하는 기간 동안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총액이 제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월단위 기준보수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월단위 기준보수의 합계액을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총액으로 한다.

제19조의7(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현행과 같음)

② -----

----- 월 보수-----
-----.

제19조의6(예술인의 고용보험료의 산정) 법 제16조의9제1항 --

-----.

제19조의7(월 보수 등의 신고) ①

사업주는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수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경우 사업주가 법

1. <u>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 공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u> 2. <u>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 공자의 전년도 개인별 보수총 액</u> 3. <u>사업주가 보험연도의 전년도 중에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에는 그 고용한 날(「고 용보험법」 제13조에 따른 피 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u> 4. <u>사업주가 보험연도의 전년도 중에 예술인으로부터 노무제 공을 새로 받은 경우에는 그 노무제공 개시일(「고용보험 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 용하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을 말한다)</u> 5. <u>사업주가 보험연도의 전년도 중에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 제공을 새로 받은 경우에는 그 노무제공 개시일(「고용보 험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u>	<u>제16조의10제3항에 따른 사항 을 공단에 신고한 때에 월 보수 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u> 1. <u>근로자</u>----- ----- 2. <u>근로자 개인별 월 보수</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	---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6. 사업주가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시킨 경우에는 그 전보일(「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전보일을 말한다)

7. (생략)

②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2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 신고해야 할 사항은 제1항 제1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및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해당 연도 개인별 보수총액으로 한다.

<신설>

<삭제>

7.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말한다.

③ 법 제16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자료”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말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3항 본문에 따라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신설>

2. 제1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월평균 보수

2의2. ~ 5. (생략)

④ 법 제16조의10제3항 단서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및 같은 영 제3조의3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

④ -----

-----.

1. (현행과 같음)

1의2. 근로자의 월 보수

2. ----- 따른

--

2의2. ~ 5. (현행과 같음)

⑤ -----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기준 미만인 근로자 -----

--- 같은 영 제3조의4제2호 ---

-----.

⑥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항-----

전체의 보수총액만을 신고할 수 있다.

⑥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4항에 따라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하거나 예술인과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종료하거나 노무제공자와의 노무제공계약을 종료한 때에 신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3. ~ 5. (생략)

⑦ (생략)

⑧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5항에 따라 제7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신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근로자가 제7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 다. (생략)

라. 전근 사업장의 명칭 및 사

----- 월 보수의 합계액만-----

-----.

⑦ -----

-----.

1. (현행과 같음)

2. -----

----- 월 보수, 보수총액 또는 월 보수액

3. ~ 5. (현행과 같음)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⑨ -----

----- 제8항 -----

-----.

1. ----- 제8항제1호-----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업장 관리번호(<u>제7항제4호</u> 의 사유가 있는 경우만 해 당한다) 2.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 공자가 <u>제7항제5호</u>에 해당하 는 경우: 그 변경 내용 3. 예술인·노무제공자가 <u>제7항</u> <u>제6호</u>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 다. (생략) ⑨ <u>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u> <u>제6항 및 제8항</u>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의8(<u>문서에 의한 보수총액</u> <u>신고</u>) 법 제16조의10제8항 단서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 모”란 <u>전년도 말일 현재</u>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을 말한 다. 제28조(고용보험료 지원대상) ① · ② (생략) ③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	-----<u>제8항제4호</u>----- ----- ----- 2. ----- ----- <u>제8항제5호</u> ----- ----- 3. ----- <u>제8항제</u> <u>6호</u>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⑩ <u>제1항, 제4항, 제6항, 제7항</u> <u>및 제9항</u>----- ----- ----- ----- -----. 제19조의8(<u>문서에 의한 월 보수</u> <u>등의 신고</u>) ----- ----- ----- <u>월 보수 등을 신고하여야</u> <u>하는</u> ----- -----. 제28조(고용보험료 지원대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만의 보수”란 근로자인 피보험자,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유사 직종·분야 근로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보수수준,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보수액에 따라 산정한 월 보수액, 이 영 제19조의3에 따라 산정한 월평균보수, 이 영 제56조의6제1항에 따라 산정한 월 보수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월별로 지급된 보수 또는 같은 영 제104조의6제2항·제104조의12제3항·제104조의13제3항에 따라 제출한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월별

-----.

1. -----

-----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월 보수, 법 제48조의3제3항 -----
----- 영 제19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월평균보수, 이 영 제19조의7제4항제1의2호에 따라 신고한 월 보수

로 지급된 보수액

2. (생략)

④ (생략)

⑤ 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 국내외 경제상황 및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재산·소득분포 현황,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29조의2(월별보험료 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생략)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월별보험료를 법 제16조의7에 따른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매월 확인한 후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신청일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 경
제성장률 -----

-----.

제29조의2(월별보험료 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
되,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
폼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
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
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
상이 되는 피보험자가 일용근로
자, 단기예술인 또는 「고용보
험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
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
라 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또는 같은 영 제104
조의6제2항·제104조의12제3항
·제104조의13제3항에 따라 기
한 내에 제출한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나 「소득세법」 제
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
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
보험료만을 지원한다.

1.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노무제공자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는 제외한다)

2. ~ 4. (생략)

③ 공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고용보험료의 지원기간 중에 지원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제56조의6제7항에 따른 월 보수액의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달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신설>

<신설>

④·⑤ (생략)

제30조(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공단은 고용보험료의 지

1.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

2. ~ 4. (현행과 같음)

③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1.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월 보수 신고

2. 지원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법 제48조의3제5항 및 이 영 제56조의6제7항에 따른 월 보수액 신고

④·⑤ (현행과 같음)

제30조(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

원을 받은 사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원금을 환수한다.

1. 2. (생략)

3. 사업주가 지원대상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 대하여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한 해당 근로자 및 예술인의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제28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의 100분의 110을 넘는 경우(지원대상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보험연도 중에 새로 고용되거나 노무제공을 개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해당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 대하여 지원받은 금액 전부

4. (생략)

②·③ (생략)

제30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신설>

--.

1. 2. (현행과 같음)

3. 사업주가 지원대상 예술인에 대하여 법 제16조의10제4항 및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한 해당 예술인의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제28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의 100분의 110을 넘는 경우(지원대상 예술인이 보험연도 중에 새로 노무제공을 개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해당 예술인에 대하여 지원받은 금액 전부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①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서

공단은 사업주가 법 제22조의2제 2항 본문에 따라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수총액 또는 개산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고용보험료 5천원 및 산재보험료 5천원을 경감할 수 있다.

제31조의2(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반환) ①·② (생략)

제32조(가산금 징수의 예외)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간이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② -----

----- 월 보수·보수
총액·월 보수액 -----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

제31조의2(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등 반환) ①·② (현행과 같음)

제32조(가산금 징수의 예외) -----

-----.

1. (현행과 같음)

2. <u>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유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u>	2. <u>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u> ----- ----- ----- ----- ----- --
제46조(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6조(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 ----- ----- -----.
1. <u>법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u>	1. <u>법 제16조의10에 따른 월 보수 등의 신고,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법 제48조의3제5항 및 제48조의6제8항에 따른 월 보수액 신고</u>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제47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① (생략) ②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략) 5. <u>보수총액 및 보험료의 신고</u>	제47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월 보수 · 보수총액 · 월 보수</u>

· 납부책임에 관한 사항

③ ~ ⑤ (생략)

제52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① 공단은 법 제37조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의 과세소득(「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생략)

2.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피보험자 관리 및 보수총액 신고 등의 보험사무 처리 업무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피보험자관리지원금”이라 한다)

3. (생략)

액의 신고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2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① -----

1. (현행과 같음)

2. -----

----- 월 보수

· 보수총액 · 월 보수액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제54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①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근로소득자료·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2. (생 략)

3. 보수·보수액·월평균보수, 법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자료

가. (생 략)

나.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예정·확정신고서의 종합소득자료, 거주자의 사업소득·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장제공사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4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월 보수·월평균보수·월 보수액 확인-----

가. (현행과 같음)

나. -----

---- 지급명세서 및 간이 지급명세서, -----

다. (현행과 같음)

4. ~ 20. (생략)	4. ~ 20.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5조(보고·제출·조사) ① 법 제44조 및 제45조제1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 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55조(보고·제출·조사) 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근로자 수, <u>보수총액</u> 및 사업 종류 등 보험료의 산정 및 징 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확 인이 필요한 경우	2. ----- <u>월 보수·보수총액</u> ----- ----- -----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6조의5(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① ~ ③ (생략) <u><신설></u>	제56조의5(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사업주가 법 제48조의2제4항 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예술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u> 2. <u>예술인의 노무제공 내용</u> 3. <u>예술인의 전년도 개인별 보 수총액</u> 4. <u>사업주가 보험연도 전년도 중에 예술인으로부터 노무제 공을 새로 받은 경우에는 그</u>

<신 설>

- ④ 사업주는 법 제48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예술인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수액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정한 직전의 지급일 이후 따로 지급한 보수액을 더한 금액에서 예술인이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다.
- ⑤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은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라 원수급

노무제공 개시일(「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5. 그 밖에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적 기록매체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대상 예술인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주는 해당 신고를 문서로 할 수 있다.

⑥ ----- 법 제48조의2제5항

-----.

⑦ ----- 법 제48조의2제8항-----

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도급금액 또는 하도급금액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을 신고한 예
 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
 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여 납부
 해야 한다. 이 경우 원천공제해
 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예술인별
 로 산정한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예술인의 고용
 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
 용한다.

1. (생 략)
2.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
 19조의4, 제19조의9 및 제24조
3.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
 ·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30조
 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1
 조, 제31조의2, 제33조, 제37조

 -----.

⑧ 법 제48조의2제9항제2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예술인의 휴업을 말한다.

⑨ ----- 제8항-----

 -----.

1. (현행과 같음)
2. ----- 제1
 9조의9 -----
3. ----- 대한 ----- 제33조

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부터 제40조의6까지, 제41조
및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
까지의 규정

4. (생략)

제56조의6(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특례) ①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은
사업주가 노무를 제공받은 월에
대하여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
랫폼사업자가 제7항에 따라 월
보수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월 보수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3항·
제4항 및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이
영 제19조의7제3항에 따른 노무
제공계약 체결 신고와 이 조 제
7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중 가
장 최근에 신고된 해당 노무제
공자의 월 보수액으로 한다.

② ~ ⑥ (생략)

⑦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는 법 제48조의3제5항에

4. (현행과 같음)

제56조의6(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특례) ① -----

영 제19조의7제4항-----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

따라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내용과 월 보수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1. (생 략)

2.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의4, 제19조의9 및 제24조

3.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

1. 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내용

3. 노무제공자의 개인별 월 보수액

4. 그 밖에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

-----.

1. (현행과 같음)

2. -----

--- 제19조의9 ---

3. ----- 대한 -----

징수·독촉 등에 관하여는 <u>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3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 제41조 및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의 규정</u> 4. (생략) 제56조의2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 공단, 건강보험공단(제56조에 따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 보험료납부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또는 플랫폼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7의2. (생략) 8. <u>법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에 따른 사무</u>	----- <u>제33조</u>----- ----- ----- ----- ----- ----- 4. (현행과 같음) 제56조의2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 ----- ----- ----- ----- ----- ----- ----- ----- ----- ----- ----- ----- 1. ~ 7의2. (현행과 같음) 8. <u>법 제16조의10·제48조의2제4항 및 제48조의3제5항에 따른 월 보수·보수총액·월 보수액 등의 신고에 따른 사무</u>
--	---

<u>9. 법 제16조의11에 따른 보수 총액 수정신고에 관한 사무</u> 9의2. ~ 23. (생략)	<u>9. 법 제16조의11(법 제48조의2 제10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 항제2호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월 보수·보 수총액·월 보수액 수정신고에 관한 사무</u> 9의2. ~ 23.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연 락 처	(044) 202 - 7358